

하도급정책 알림이

뉴스레터 제08호 (2024. 6. 25.)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정책 관련 소식

■ 202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28일부터 제조·유통·건설업종 총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작년에 이어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납품단가(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및 기술자료 요구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제값받는 납품대금 실태 및 기술탈취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직접적으로 구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법령개정,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통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조사결과도 데이터화 하여 연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할 계획이므로 해당 자료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 기술탈취 근절 위한 하도급법 개정

오는 8월 28일부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그간 하도급거래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어 있었으나, 법상 배상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기술유통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소송 등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배상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술유통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기술유통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중소 피해기업의 입중 부담 완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이 5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신청내용·조정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추가 소식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정·배포

공정위는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를 설명하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제정·배포하였는바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I 정책 관련 소식

202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024.6.28.~10.6.)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6.28.부터 10.6.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수요자인 총 10만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 **언제하나요?** : 1만개 원사업자 조사는 2024.6.28.~7.31.까지 실시
9만개 수급사업자 조사는 2024.8.26.~10.6.까지 실시
※ 내부사정 등으로 원·수급사업자 조사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대상자는?** : 6월 4째주부터 발송된 우편물(등기)을 수령한 사업자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표본추출)
※ 등기 반송 등으로 미수령 대상자에게는 별도 유선 연락 예정

- ☞ **조사방식은?** : 실태조사 누리집(<http://hado.ftc.go.kr>)을 방문하여 작성·제출

202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주요내용

- ▶ **(하도급거래 현황)** 하도급 업체수, 하도급 거래금액, 결제수단별 거래규모, 하도급대금 조정, 연동제 계약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등
- ▶ **(하도급법 준수실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서면계약서 교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 실태, 부당 감액 및 부당 특약 등
- ▶ **(관련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여부,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및 하도급정책 만족도 등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99년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에 한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관련 법령개정,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국가통계자료로 승인됨에 따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공정위) ⇨ 하도급거래실태조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2024.8월 시행)

- 오는 8월 28일부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기술유용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②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하도급거래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어 있었으나 법상 배상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됨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소송 등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

-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최대 3배 → 5배로 상향)**
기술유용으로 인한 중소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법 등의 규정을 하도급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① 피해기업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통상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합리적 대가’ 적용 ③ 목적물의 범위에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도 포함 ④ 원사업자 이익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도 포함

- ▶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 손해배상 책임 강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4.5.28.시행)

■ 하도급법 시행령이 5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②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자진시정 시의 과징금 감경 상한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진시정(50%)과 조사협력(20%)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합산하면 7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야 하나 기존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설정되어 있어 자진시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② '22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서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조정이 있을 때까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 내용을 수소법원에 알리고, 소송절차가 중지되면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도출된 조정 결과에 대해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메뉴얼

공정위는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에 따른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대금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법상 주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 **(개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정금액의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야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 **(면제사유)**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액공사·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 등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 보증의무가 면제됨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발주자 직접지급)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증기관에의 보증금 청구)** 원사업자의 거래정지·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6항)
- **(제재)**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
 - ①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하도급법 제25조)
 - ②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하도급법 제25조의3)
 - ③ **(벌칙)**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법 제30조)
 - ④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짐(하도급법 제35조)
 - ⑤ **(벌점부과)** 시정조치 별로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 초과 시 제재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 **(개요)** 발주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됨(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직접지급 범위와 금액)**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 **(원사업자 채권 압류 시)** 원사업자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경합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이때, ‘압류·가압류 등의 통지’와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송달된 시점(합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
-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
 - ①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하도급법 제25조)
 - ②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하도급법 제25조의3)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정책/제도-기업거래정책-하도급거래-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상담 및 사건신고 등 안내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상담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공정거래조정원): 02-636-9211, 9217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3132
- 공정거래조정원 : 02-6363-9261
- 대한건설협회 : 02-3485-8382 /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하도급법 위반 사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별 신고사건 담당지역(원사업자 소재지 기준)

-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서울, 경기, 강원 지역 건설위탁) : 02-2110-6192
- 서울사무소 제하도급과(서울, 경기, 강원 지역 제조·용역위탁) : 02-2110-6127
- 부산사무소 하도급과(경남, 부산 지역) : 051-460-1048
-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 042-481-8018
-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 : 062-975-6845
- 대구사무소 하도급과(경북, 대구 지역) : 053-230-6300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1588-1490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549-2105, 2106